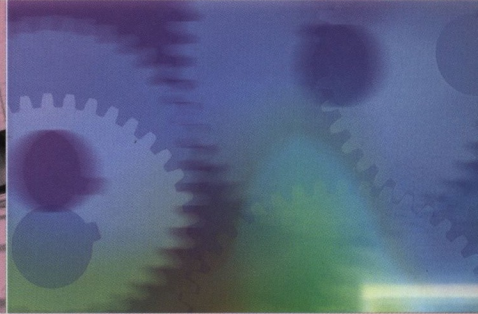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4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번역 및 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기갑 교수
김현정, 류희진, 박진아, 신소현
문지혜, 김지영, 임예준

한국어판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M01644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발 간 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의 큰 임무 중 하나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즉, 인권정책을 권고함에 있어서 그 주요기준을 국제인권규범에 두었고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국제인권규범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의 한계와 전문성에 비추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 보니 해당 규범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기초한 업무 처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1년 이상의 심혈을 기울여 주요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서 발표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완역 출간한 것은 향후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6개의 인권조약의 일반논평은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국내에서 어느 기관도 그 완역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었다. 바라건대 이 노작이 우리 위원회의 각 담당자들의 책상 위에 놓여져 국제인권규범의 바른 해석을 함에 있어 참고서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에게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면 망외의 기쁨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어려운 작업의 번역을 맡아 주신 고려대학교 박기갑 교수님을 비롯한 동대학 국제법 석박사 연구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나아가 이 작업을 기획하고 번역을 감수한 인권정책본부 국제인권팀 관계자의 노고에 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영 황

서 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국제인권법에 대한 관심은 전례 없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위원회법이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주요 근거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찾고 있고, 인권위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는 설립 이래 인권정책 안전과 진정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인권위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세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국제인권법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해 소상한 설명이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국제인권법에 관한 언급은 각종 검토보고서에서 관련조약의 조문 나열로 끝나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많은 실무자들은 스스로 불만을 갖게 되었고 보다 심화된 국제인권법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반논평은 인권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조약위원회(소위 조약감시기구)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해석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조약위원회는 추상적인 조약의 내용을 해석을 통해 풍부하게 만듦으로써 국제인권법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추상적인 헌법을 해석을 통해 점점 풍부한 내포를 만듦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헌법의 실질적 외연을 넓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조약감시기구가 수행하는 해당 인권조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일반논평)은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나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논평은 그 자체로서는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법이 아니나 국제인권법이 무엇이나를 설명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인권조약에 대한 설명 자료가 이러저러하게 있지만 이 일반논평을 떠나서는 그러한 설명도 큰 의미가 없다. 조약감

시기구가 인정하지 않는 인권조약의 해석은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논평의 이런 중요성을 인해 인권위는 지난 1기 시절부터 우리가 가입한 6대 인권조약의 일반논평을 하루 빨리 번역하여 실무에 반영하고자 작업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 업무는 생각한 것보다 쉽지 않았다. 먼저 번역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년 여름이 되기 직전 인권위는 이 작업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말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번역 작업을 전문가인 고려대 국제법 교실의 박기갑 교수님과 그의 석박사 제자들(김현정, 임예준, 박진아, 문지혜, 류희진, 김지영, 신소현)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꼬박 한 학기 동안의 수고로 일반논평의 초벌 번역은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사업의 책임자로서 박교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심심한 고마움을 전한다. 그러나 이 작업이 끝나는 것은 또 다시 수개월이 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초벌번역의 오류를 잡고 전체적으로 문장을 다듬는 작업도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이 사업의 담당자인 국제인권팀의 오유진 선생의 몫이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지난 몇 달간 주말 휴일을 반납하였다. 그의 노고를 들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바라는 바는 산고의 과정을 통해 출간된 이 일반논평이 부디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인권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것이다. 실무자들은 인권정책과 관련된 보고서이든 진정사건의 보고서이든 검토기준으로서 국제인권법을 거론할 때 반드시 이 일반논평을 보고 해당 부분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 검토기준에 관한 한 한 단계 높은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을 전공하는 연구자 및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저작물이 광범하게 사용된다면 지난 1년간 이 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망외의 기쁨일 것이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박 찬 운

목 차

IV.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권고들	3
일반권고 1: 당사국들에 의한 보고	4
일반권고 2: 당사국들에 의한 보고	5
일반권고 3: 교육 및 홍보 캠페인	6
일반권고 4: 유보	7
일반권고 5: 잠정적 특별 조치	8
일반권고 6: 효과적인 국가 조직과 홍보	9
일반권고 7: 자원	11
일반권고 8: 동 협약 제8조의 이행	13
일반권고 9: 여성의 상황에 관한 통계자료	14
일반권고 1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 제10주년 기념	15
일반권고 11: 보고의무를 위한 기술적 자문 서비스	17
일반권고 12: 여성에 대한 폭력	18
일반권고 13: 동일노동 동일임금	19
일반권고 14: 여성 할례	21
일반권고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가 계획에 있어서의 여성차별방지	23
일반권고 16: 시골과 도시의 가족기업에서의 무보수 여성 근로자	25
일반권고 17: 국내총생산에서 무보수 가사활동의 측정, 정량화 및 그에 대한 인정	27
일반권고 18: 장애 여성	29
일반권고 19: 여성에 대한 폭력	30
일반권고 20: 동 협약에 대한 유보	39
일반권고 21: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	40

일반권고 22: 동 협약 제20조의 개정	54
일반권고 23: 정치적 및 공직 생활	56
일반권고 24: 동 협약 제12조(여성과 보건)	72
일반권고 25: 동 협약 제4조 1항 (잠정적 특별 조치)	83

CONTENTS

IV.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99
General recommendation No. 1: Reporting by States parties	99
General recommendation No. 2: Reporting by States parties	99
General recommendation No. 3: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100
General recommendation No. 4: Reservations	100
General recommendation No. 5: Temporary special measures	101
General recommendation No. 6: Effective national machinery and publicity	101
General recommendation No. 7: Resources	102
General recommendation No. 8: Implementation of article 8 of the Convention	103
General recommendation No. 9: Statistical data concerning the situation of women	103
General recommendation No. 10: Ten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04
General recommendation No. 11: Technical advisory services for reporting obligations	105
General recommendation No. 12: Violence against women	105
General recommendation No. 13: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106
General recommendation No. 14: Female circumcision	107

General recommendation No. 15: Avoidanc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national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108
General recommendation No. 16: Unpaid women workers in rural and urban family enterprises	109
General recommendation No. 17: Measurement and quantification of the unremunerated domestic activities of women and their recognition in the gross national product	110
General recommendation No. 18: Disabled women	111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Violence against women	112
General recommendation No. 20: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117
General recommendation No. 21: Equality in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118
General recommendation No. 22: Amending article 20 of the Convention ...	127
General recommendation No. 23: Political and public life	128
General recommendation No. 24: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women and health)	139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temporary special measures)	147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IV.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권고들

IV.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권고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21조 1항에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정보들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권고들을 작성할 수 있다. 그 제안과 일반권고들은 당사국들의 논평이 있다면, 그것과 함께 본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25건의 일반권고를 채택하고 있다.

제5차 회기 (1986)*

일반권고 1: 당사국들에 의한 보고

동 협약의 제18조에 기하여 제출된 최초 보고서는 제출일까지의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 그 후에, 보고서는 1차 보고서가 제출 완료된 후 적어도 매 4년마다 제출되어야 하며, 동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있어 발생한 장애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 문서 A/41/45에 포함.

제6차 회기 (1987)*

일반권고 2: 당사국들에 의한 보고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동 협약 제18조에 기하여 제출한 일부 최초 보고서들이 관련 당사국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침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업무처리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왔다는 점을 유념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동 협약 제18조에 기하여 보고서를 준비하는 당사국들은, 1983년 8월에 채택된 일반 지침(CEDAW/C/7)상의 형식, 내용, 보고일자를 지켜야 한다.

(b) 당사국들은 1986에 채택된 일반권고의 다음 규정을 지켜야 한다.

“동 협약의 제18조에 기하여 제출된 최초 보고서는 제출일까지의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 그 후에, 보고서는 최초 보고서가 제출 완료된 후 적어도 매 4년마다 제출되어야 하고, 동 협약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 직면하게 된 장애들과 그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조치들을 수록하여야한다.”

(c) 당사국의 보고서를 보충하는 추가정보는 적어도 그 보고서의 상정이 예정된 회기 시작 3개월 전에 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 문서 A/42/38에 포함.

제6차 회기 (1987)*

일반권고 3: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가 1983년부터 당사국들이 제출한 34개의 보고서를 검토하였음을 고려하고,

비록 보고서들이 서로 다른 개발수준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상기 보고서들이, 차별을 영속시키고 동 협약 제5조의 이행을 방해하는,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의 존재와 사회문화적 요소의 다양한 양상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모든 당사국들이, 편견과 여성의 사회적 평등원칙의 충실한 이행을 방해하는 현재의 관행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 문서 A/42/38에 포함.

제6차 회기 (1987)*

일반권고 4: 유보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당사국들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회기 중 검토하였고,

동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유보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고,

1988년 뉴욕에서 열릴 다음 회의에서 유보문제를 상정하기로 한 당사국들의 결정과,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그러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재고하기로 한다는 최종 제안들을 환영한다.

* 문서 A/42/38에 포함.

제7차 회기 (1988)*

일반권고 5: 잠정적 특별 조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예비 문건과 답변서들은 차별적 법률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여전히 남녀 간의 사실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함으로써 동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동 협약의 제4조 1항을 상기하고,

당사국들이 교육, 경제, 정치, 고용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제적 조치, 우대 혹은 할당제도와 같은 잠정적 특별 조치들을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 문서 A/43/38에 포함.

제7차 회기 (1988)*

일반권고 6: 효과적인 국가 조직과 홍보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고려하였고,

유엔 총회 결의 1987년 11월 30일자 42/60을 주목하고,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정부의 고위급에서, 아래에 대한 적절한 자원과 위임 및 이하의 권한을 가진 효과적인 국가 조직, 기구, 절차를 설립하고/혹은 강화한다.

(a) 모든 정부 정책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언한다.

(b)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시한다.

(c) 새로운 정책을 고안하고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과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조력한다.

2. 동 협약과 제18조에 기하여 당사국들로부터 제출된 보고서, 본 위원회의 보고서가 관련 당사국의 언어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 문서 A/43/38에 포함.

3. 동 협약과 본 위원회의 보고서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유엔 사무총장과 홍보부의 노력을 구하도록 한다.

4. 본 권고에 관해서 취해진 조치들을 당사국들의 최초 보고서와 정기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제7차 회기 (1988)*

일반권고 7: 자원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당사국들로 하여금, 비엔나에서 본 위원회의 장래 회기를 개최하는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총회 결의 40/39, 41/108, 특히 42/60의 제14항을 주목하고,

인권 조약의 이행과 조약 기구들의 사무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 센터와 사무국의 사회개발 및 인도적 업무 센터 사이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하는, 총회 결의 42/105, 특히 제11항을 유념하고,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당사국들은 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네바 소재 인권 센터와 비엔나 소재 사회개발 및 인도적 업무 센터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들에 대하여 계속 지지한다.
2. 당사국들은 본 위원회가 뉴욕과 비엔나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제안을 지지한다.
3. 당사국들은 본 위원회가 동 협약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유용한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 특히 회기의 준비기간과 회기 중에 본 위원회를 돕기 위해 유용한 전일 근무 직원(full-time staff)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 문서 A/43/38에 포함.

4. 당사국들은 추가 보고서와 자료들이 기한 내에 유엔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 적절한 시기에 본 위원회에 배포,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차 회기 (1988)*

일반권고 8: 동 협약 제8조의 이행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동 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당사국들의 보고서들을 고려하였고,

당사국들이, 동 협약 제8조의 완전한 이행과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들의 정부를 대표할 기회를 가지는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국제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협약 제4조에 따른 추가적인 직접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문서 A/43/38에 포함.

제8차 회기 (1989)*

일반권고 9: 여성의 상황에 관한 통계자료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동 협약의 각 당사국들에서 여성이 실제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보고서를 제출한 다수 당사국들이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보아왔고,

당사국들은, 국가인구조사나 기타 사회, 경제의 서베이를 기획하는 국가통계기구가 조사 자료를 백분율과 절대수치에 있어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관심 있는 사용자들이 특정 영역에서 여성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 문서 A/44/38에 포함.

제8차 회기 (1989)*

일반권고 1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 제10주년 기념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1989년 12월 18일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 제10주년 기념일임을 고려하고,

그 10년 동안, 동 협약이 유엔이 회원국 내 사회에서 성별간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채택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들 중 하나임이 증명되었음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국가 조직과 홍보에 관한 일반권고 6(제 7차 회기, 1988)을 상기하고,

동 협약 채택 제1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당사국들이 이하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1. 각국의 주요 언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기 위한 회의 및 세미나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각국에서 동 협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2. 당사국의 국내 여성기구들에게 동 협약과 그 이행에 관련된 홍보 캠페인에 협력하도록 요청하고, 비정부기구들로 하여금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동 협약과 그 이행을 홍보하도록 독려하며,

* 문서 A/44/38에 포함.

3. 유엔과 유엔 체제의 모든 활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관계된 동 협약의 원칙들, 특히 제8조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독려하고,

4. 동 협약과 그 이행에 관련하여 유엔의 모든 공식 언어로 된 출판물 및 기타 간행물들을, 전문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발행하고 공표함으로써 동 협약 채택 제10주년을 기념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동 협약에 대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여성진흥국과 비엔나 소재 유엔사무소의 사회개발 및 인도적 업무 센터에 유용한 필요 자원을 조성한다. 상기 센터는 여성을 위한 10년간의 유엔의 업적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던 세계회의, 즉 ‘평등, 개발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최초로 발행되었던 본 위원회 보고서(A/CONF.116/13)를 갱신하고 출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분석을 준비한다.

제8차 회기 (1989)*

일반권고 11: 보고의무를 위한 기술적 자문 서비스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1989년 3월 3일까지, 96개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음을 유념하고,

상기 일자까지 60개의 최초 보고서와 19개의 2차 정기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36개의 최초 보고서와 36개의 2차 정기 보고서가 1989년 3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사무총장이 현재의 자원범위와 자문 서비스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내에서, 국제인권 규약들에 따른 자국의 보고 의무를 실행하는데 있어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총회 결의 43/115, 제9항의 요구를 환영하고,

당사국들은 동 협약 제18조에 따른 보고의무이행을 요구받은 당사국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훈련 세미나를 포함한 기술적인 자문 서비스 프로젝트를 독려, 지지하고 또한 그 프로젝트에 협력하여야 함을 권고한다.

* 문서 A/44/38에 포함.

제8차 회기 (1989)*

일반권고 12: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가정에서, 직장 혹은 사회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도록 요구하는 동 협약의 제2조, 5조, 11조, 12조 및 16조를 고려하고,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88/27의 내용을 유념하고,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을 권고한다.

1.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성폭력, 가정 내 학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현행 법률.
2. 이러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채택된 기타 조치들.
3. 공격 혹은 학대의 여성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실재.
4.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사건 및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한 통계자료.

* 문서 A/44/38에 포함.

제8차 회기 (1989)*

일반권고 13: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노동자의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00호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대다수 당사국들에 의하여 비준되었음을 상기하고,

1983년부터 당사국들의 51개의 최초 보고서와 5개의 2차 정기 보고서를 검토해왔음을 또한 상기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많은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극복하고, 동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당사국들의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음을 고려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아직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00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비준을 독려한다.
2. 당사국들은, 여성들이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직종들과 남성들이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직종들에서, 상이한 본질을 가진 직종들의 가치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성 중립적 기준에 입각한 직업평가체계의 연구, 개발 및 채택을 검토하여야 하고, 당사국들

* 문서 A/44/38에 포함.

은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국 보고서에 성취한 결과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실행 가능한 한, 이행 기구의 설립을 지지하고, 그들이 가입한 집단적 협약의 당사국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격려하여야 한다.

제9차 회기 (1990)*

일반권고 14: 여성 할례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 할례와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기타 전통 관행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인권위원회와 소수자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인권소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행들이 존재하는 국가의 정부, 국내적 여성기구들, 비정부기구들,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전문기구들, 유엔아동기금이, 여성 할례와 같은 전통 관행들이 여성과 아동에 대하여 심각한 건강 및 기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특히 잘 보여주는 사안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주목하고,

전통 관행들에 관한 특별 실무 그룹의 연구 및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 관행들에 관한 특별 보고자의 연구를 관심 있게 주목하고,

여성 자신이 여성과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하는 관행들을 확인하고 그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들은 여성과 모든 이해관계집단이 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지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여성 할례와 같은 악습이 계속되도록 하는 문화적, 전통적, 경제적 억압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 문서 A/45/38과 정오표에 포함.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당사국들은 여성 할례 관행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대학들, 의료 및 간호 단체들, 국내적 여성기구들 혹은 기타 기구들에 의한 상기 전통 관행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보급.

국내적, 지역적 차원에서 여성 할례와 기타 여성에게 해로운 관행들을 근절하려는 여성기구들에 대한 지지.

여성 할례를 근절하려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협력하는 미디어와 예술작품들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정치가, 전문가, 종교 및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격려.

여성 할례에 의해 초래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에 입각한 적절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세미나의 도입.

(b) 당사국들은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 여성 할례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전략들을 자국의 국내보건정책에 포함시킨다. 그러한 전략들은 여성 할례의 해로운 효과를 설명하여야 하는, 전통적인 산파를 포함하는 보건 인력에 대한 특수한 책임 부과를 포함할 수 있다.

(c) 당사국들은 전통적 악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개하여 온 시도들을 지지하고 돕기 위하여 유엔 체제하의 적절한 기구들로부터 원조, 정보 및 조언을 구한다.

(d) 당사국들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제10조 및 12조에 기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국 보고서에 여성 할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다.

제9차 회기 (1990)*

일반권고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가 계획에 있어서의 여성차별방지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전 세계적 유행과 여성의 권리 실행측면에서 에이즈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들 모두의 잠재적 효과들에 대하여 주의를 갖게 한 정보를 고려하였고,

세계보건기구 및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관련된 기타 유엔 기구들, 기관 그리고 조직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와 자료들, 특히, 사무총장이 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한 여성 진출에 미치는 AIDS의 영향에 관한 기록과 1989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협회의 최종 문서를 존중하고,

1988년 3월 13일자 “HIV 감염자와 AIDS 보균자와 관련된 차별방지에 관한 세계보건총회 결의 WHA 41.24”와 1989년 3월 2일자 “보건영역에서의 차별대우방지에 관한 인권위원회 결의” 1989/11, 그리고 특히 1989년 11월 30일자 “여성, 아동 및 AIDS에 관한 파리선언”에 주목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AIDS의 날, 1990년 12월 1일의 주제를 “여성과 AIDS”로 하기로 공표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문서 A/45/38에 포함.

(a) 당사국들은, 특히 여성과 아동에 있어서 HIV의 감염과 AIDS의 위험 및 그 영향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보급하려 노력을 강화한다.

(b) AIDS 퇴치 프로그램들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필요 및 여성의 출산기능과 일부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을 HIV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와 관련된 요소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 당사국들은 주요한 보건의료에서의 실제적인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HIV의 감염예방 분야에서 여성들의 치료사적, 보건복지사적, 교육자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d) 모든 당사국들은 동 협약 제12조에 기하여 제출되는 자국 보고서에, AIDS가 여성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및 감염된 여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AIDS에 대응하여 여성에게 행해지는 특수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다.

제10차 회기 (1991)*

일반권고 16: 시골과 도시의 가족기업에서의 무보수 여성 근로자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제2조 (c)와 제11조 (c), (d), (e)와 여성의 상황에 관한 통계적 자료에 대한 일반권고 9(제8차 회기, 1989)의 내용을 유념하고,

당사국에서 높은 비율의 여성들이 보통 가족 내 남성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보수와 사회보장, 사회급여를 받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가 일반적으로 가족기업 내의 무보수 여성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고,

무보수 노동은 동 협약에 위배되어 여성에 대한 착취의 한 형태를 구성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가족기업 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여성의 법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b)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기업 내에서 보수, 사회보장 및 사회급여 없이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고,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그 자료를 포함시

* 문서 A/46/38에 포함.

킬 것.

(c)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는 기업 내에서 보수, 사회보장 및 사회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여성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제10차 회기 (1991)*

일반권고 17: 국내총생산에서 무보수 가사활동의 측정, 정량화 및 그에 대한 인정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제11조를 유념하고,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진보 전략”의 120항을 상기하고,

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의 무보수 가사활동의 측정과 정량화가 사실상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신하고,

그러한 측정과 정량화가 여성의 발전과 관련된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제
공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유엔통계위원회의 제21차 회기에서 이루어진 국가 회계 체계(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최신 개정과 여성에 관한 통계의 개발에 관한 논의를 주목하고,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의 무보수 가사활동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와 실험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할 것; 예를 들어, 국가 가구조사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시간사용 조사의 실
시 및 가정과 노동시장 두 곳 모두의 활동에 투입된 시간을 성에 따라 분류한 통계의
수집.

* 문서 A/46/38에 포함.

(b)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진보 전략”의 조항들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에 여성의 무보수 가사 활동을 정량화하고 포함시키는 조치들을 취할 것.

(c) 국가 회계에 여성의 무보수 가사 활동을 편입시키는 데 있어 이루어진 진전 및 무보수 가사 활동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 조사와 실험연구에 대한 정보를 동 협약 제18조에 기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제10차 회기 (1991)*

일반권고 18: 장애 여성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특히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3조를 특히 고려하고,

당사국의 60개 이상의 정기 보고서를 고려한 바, 장애 여성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장애 여성들이 그들의 특수한 생활 조건에서 비롯된 이중 차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진보 전략”의 제296항에서 장애 여성은 “특별 우려영역 (areas of special concerns)”라는 표제 하에 취약한 집단으로서 간주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1982)에 대한 지지를 확신하고,

당사국은 정기 보고서에서 장애 여성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즉 교육과 고용, 의료 서비스, 사회보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 문서 A/46/38에 포함.

제11차 회기 (1992)*

일반권고 19: 여성에 대한 폭력

배경

1. 성에 근거한 폭력은 남성과 평등하다는 것을 기초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여성의 자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별의 한 형태이다.
2. 1989년, 본 위원회는 국가들이 자국의 보고서에 폭력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권고하였다(일반권고 12, 제8차 회기).
3. 1991년 제10차 회기에서, 본 위원회는 제11차 회기 중 동 협약 제6조에 대한 토의 및 검토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 여성 착취와 관계된 동 협약의 다른 조항들로 나누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주제는 1990년 12월 18일자 총회 결의 45/155에 의해 소집된 1993년 세계인권회의를 예상하고 선택된 것이었다.
4. 본 위원회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 성에 근거한 폭력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결론지었다. 동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국가들에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 요구된다.
5.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정책을 재검토하고, 동 협약에 따른 보고 시에 성에 근거한 폭력과 관련된 본 위원회의 이하의 논평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 문서 A/47/38에 포함.

일반논평

6. 동 협약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차별의 정의는 성에 근거한 폭력을 포함하는데, 즉 이 때 폭력이라 함은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해지거나 혹은 폭력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훨씬 더 불균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혹은 성적 위해나 고통,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위협, 강요 및 기타 자유의 박탈을 가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성에 근거한 폭력은 협약의 어떠한 규정이 명확히 폭력을 언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 협약의 특정 규정들을 위반할 수 있다.

7. 성에 근거한 폭력은 일반 국제법 또는 인권 협약들에 기하여 여성이 인권과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동 협약 제1조의 해석 하에서 차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다음과 같다.

- (a) 생명권.
- (b)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잔혹한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 (c)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 충돌 시 인도적 규범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d) 인간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 (e) 법률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f) 가족 내에서 평등할 권리.
- (g)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h) 정당하고 우호적인 노동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8. 동 협약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러한 폭력은 동 협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제인권법과 기타 협약들에 기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9. 그러나 동 협약상의 차별이 정부에 의해서 혹은 정부를 대신하여 취해지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 협약 제2조 (e)항에서는 당사국이 여타 사람, 조직 혹은 기업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 국제법과 특별한 인권 협정들 하에서, 국가는 역시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폭력행위를 적발, 처벌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사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배상을 지급하기도 한다.

동 협약의 특정 조항들에 대한 논평

제2조와 3조

10. 제2조와 3조는 제5조와 6조에 기한 특정 의무와 더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시켜야 하는 종합적인 의무를 창설한다.

제2조 (f)와 10조 (c)

11.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여기거나 전형적인 성역할을 지닌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태도는 가족 내 폭력과 학대, 강제 결혼, 지참금 살인, 염산 공격(acid attack), 여성 할례와 같은 폭력이나 강요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관행들을 지속시킨다. 그러한 편견과 관행은 성에 근거한 폭력을 여성에 대한 보호와 통제의 한 형태로서 정당화한다.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온전함에 대한 이와 같은 폭력들의 효과로서 여성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향유, 행사, 인정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논평은 성에 근거한 폭력들의 결과로서 현실적 혹은 위협적인 폭력이 여성의 종속적 역할 유지를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의 열악한 정치 참여 수준과 낮은 교육, 기술, 노동 기회의 수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2. 이러한 태도는 또한 여성을 한 개인으로 보기 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포르노의 만연과 성적 묘사, 기타 여성의 상업적 이용을 조장한다. 이는 또 다시 성에 근거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6조

13. 당사국은 제6조에 기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와 여성 매춘을 이용한 착취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14. 빈곤과 실업은 여성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 기존의 인신매매 형태에 더하여 섹스 관광, 개발도상국 여성들을 선진국의 가사 노동에 채용하는 것, 개발도상국의 여성과 외국 남성간의 계획 결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적 착취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행들은 여성의 평등한 권리 향유와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것과는 모순된 것이다. 그것은 여성을 폭력과 학대의 특수한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다.

15. 빈곤과 실업은 어린 소녀들을 포함하여,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매춘에 빠져들게 한다. 매춘은 여성의 위치를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거나 불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특히 치명적인 폭력이 된다. 그 여성들도 강간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하여 법의 평등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16. 전쟁, 무력충돌 그리고 영토 점령은 매춘과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폭행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특수한 보호와 처벌 조치들을 필요하게 한다.

제11조

17. 고용 평등은 여성이 작업장에서의 성희롱과 같은 성에 근거한 폭력에 노출될 때 심각하게 훼손된다.

18.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접근과 같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성적인 언사 (sexually coloured remarks), 포르노를 보여주거나 말 또는 행동으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들을 포괄한다. 그러한 행동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보건과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여성이 자신의 항의로 인하여 채용, 승진을 포함하여 고용 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믿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적대적 작업환경을 형성하게 될 때에는 차별적인 것이 된다.

제12조

19. 당사국은 제12조에 기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다.

20. 일부 국가에는 문화와 전통에 의하여 지속된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해하는 전통적인 관행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행들은 임신부에 대한 음식물 제한과 남아 선호, 여성 할례 혹은 성기 절단(genital mutilation)을 포괄한다.

제14조

21. 시골에 사는 여성들은 다수의 시골 공동체에서 강조되는 여성의 종속적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성에 근거한 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다. 시골 지역사회 출신 소녀들은 그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시골 지역사회를 떠날 때 특히 폭력과 성적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제16조 (및 제5조)

22. 강제적인 불임과 낙태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성이 자신의 자녀들의 숫자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23. 가족 내 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형태 중 가장 악의적인 것 중 하나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 가족 관계에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은 구타, 강간, 기타 다른 형태의 성폭행, 정신적인 폭력 등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지속되어 온 각

중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 회피도 폭력과 강요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여성의 건강에 위협을 가져오고 양성평등을 토대로 한 여성의 가정 생활과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침해한다.

특별권고

24. 이 논평의 견지에서,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당사국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모든 형태의 성에 근거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b) 당사국은 가정 폭력, 학대, 강간, 성폭력, 기타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한 법이 모든 여성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완전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재판관과 법집행관, 기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성 인지성 훈련(gender-sensitive training)이 중요하다.
- (c) 당사국은 폭력의 범위, 원인, 영향과 폭력을 방지하고 취급하는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통계와 조사의 편찬을 장려해야 한다.
- (d) 매체들이 여성에 대한 존중을 증시하고 증진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e)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유지시키는 사고방식, 관습과 관행의 본질과 범위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폭력들에 대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그들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취해온 조치들과 그러한 조치들의 효과에 대해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
- (f) 그러한 사고방식과 관행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국가들은 여성의 평등을(권고 3, 1987) 해하는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과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g)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한 예방 및 징벌 조치들이 필요하다.
- (h)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서 모든 이러한 문제점들과 형벌규정, 예방 및 재활 조치들을 포함하여, 매춘에 종사하였거나 인신매매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 온 조치들에 대해서 서술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의 실효성도 서술하여야 한다.
- (i) 효과적인 청원절차와 배상을 포함하는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j) 당사국은 성희롱에 대한 정보와 성희롱 및 직장에서의 강압적으로 행해지는 기타 형태의 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자국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k) 당사국은 가족 내 폭력, 강간, 성폭행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성에 근거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난처 제공, 특히 숙련된 보건 인력(health workers), 재활 및 상담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수립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l) 당사국은 여성 할례와 같은 관행들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고, 보건 분야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여성 할례(권고 14)에 관한 본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 (m) 당사국은 출산과 생식에 관한 강제를 방지하고 여성이 출생률 조절과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낙태와 같은 위험한 의료 시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n)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정도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하고, 취한 조치들과 그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

(o) 당사국은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시골 여성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격리된 공동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특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p)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들은 직업훈련, 고용기회제공 및 가내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 대한 감시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q) 당사국은 시골 여성들이 처한 위험, 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학대의 정도와 성격, 그들의 필요와 지원 및 기타 서비스,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r) 가족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정 폭력의 경우 민사 구제와 필요한 형사 처벌.

여성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에 관하여 명예 변호를 막기 위한 입법.

가족 내 폭력 피해자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피난처 제공, 상담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가정 폭력을 가해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근친상간이나 성적 학대가 일어난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s) 당사국은 가정 폭력과 성적 학대의 정도와 그에 대응하여 취해진 예방적, 징벌적, 구제적 조치들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t) 해당 당사국은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응하여 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

여 다음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기타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종류의 폭력, 특히 가족 내 폭력과 학대, 성폭행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에 대응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 제재, 배상적인 민사 구제 규정을 포함하는 실효적인 법적 조치들.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공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예방 조치들.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 제공, 상담, 사회 복귀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호 조치들.

- (u) 해당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서에는 폭력의 각 유형별 발생 빈도와 피해 여성에게 그러한 폭력이 미친 영향에 대한 모든 유용한 자료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 (v) 해당 당사국의 보고서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취해져온 법적, 예방적, 보호 조치들과 그러한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차 회기 (1992)*

일반권고 20: 동 협약에 대한 유보

1.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일반권고 4에서도 받아들여진 제28조 2항에 관련한 동 협약의 유보에 관한 당사국의 제4차 회의 결과를 상기했다.
2. 본 위원회는 1993년 세계 인권 회의를 위한 준비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당사국은
 - (a) 다른 인권 조약들에 대한 유보의 맥락에서 동 협약에 대한 유보의 유효성과 법적 효과의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 (b) 모든 인권 조약들의 이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유보를 재고하여야 한다.
 - (c) 다른 인권 조약들의 유보에 관한 절차와 견줄만한 유보 절차를 동 협약에 도입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문서 A/47/38에 포함.

제13차 회기 (1994)*

일반권고 21: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총회 결의 34/180, 부속서)은 사회와 가족 내에서 여성 인권이 평등함을 확인한다. 동 협약은 인권에 관련된 국제 조약들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다른 협약과 선언들 역시 가족과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에는 세계인권선언(총회 결의 217/A (III)),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결의 2200 A (XX I), 부속서),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결의 1040 (X I), 부속서), “혼인, 혼인의 취소연령 및 혼인신고의 합의에 관한 협약”(결의 1763 A (XVII), 부속서) 및 그에 대한 후속 권고(결의 2018 (XX))와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진보 전략”이 포함된다.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이미 위에서 언급된 협약과 선언들의 요체가 되는 여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하여 상기한다. 더 나아가 동 협약은 남성과 여성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케 하는 문화와 전통의 중요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을 제한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는 점까지 인정한다.

배경

4. 1994년은 총회 결의 44/82에서 세계 가족의 해로 정해진 바 있다. 본 위원회는 곧이어 개최될 국가 기념 의식을 지지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가족 내에서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문서 A/49/38에 포함.

5. 본 위원회는 세계 가족의 해를 맞이하여, 가족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 특별한 비중을 두고 있는 동 협약의 세 조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논평

6. 국적은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 결정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들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한다. 또한 국적은 정주를 근거로 취득하거나 혹은 무국적과 같은 인도적 이유로 부여되기도 한다. 국적자나 시민권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여성은 투표권 혹은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하고 공적 급부와 거주 선택에의 접근을 차단당하여 왔다. 국적은 성인 여성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여야 하고 혼인이나 혼인 해소 혹은 부(夫)나 부(父)의 국적 변경을 이유로 하여 임의적으로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

제15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동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평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

에서 여성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논평

7. 여성이 전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재정적 신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혹은 부 또는 남성 친족의 동의나 보증에 의해서만 상기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 여성은 법적 자치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여성이 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여성을 자신의 사업에 대한 법적 운영 또는 여타 형태의 계약 체결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여성이 자신과 피부양인을 부양할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8. 일부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는 법에 의해서 또는 법적 자문에 대한 접근이나 법원에 구제를 구할 능력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의 증인 자격 혹은 증거력이 채택이나 비중에 있어서 남성의 그것에 비해 미약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법률이나 관습은 여성이 재산을 평등하게 보유하고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제적으로 제한하고, 공동체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귀중한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해한다. 국가가 여성의 법적 능력을 법률로써 제한하거나 혹은 개인이나 기구를 통하여 제한하게 하는 경우, 국가는 여성이 갖는 남성과 평등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여성이 자신과 피부양인을 부양할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9. 보통법계 국가에서 주소(domicile)는 어떤 사람이 어느 국가에 주재하고자 하는가와 어느 관할권에 속하는가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본래 주소는 아동의 경우 부모를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고,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그 사람이 주재하는 국가나 영구히 주재

하고자 하는 국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적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국의 보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여성이 언제나 법적으로 자신의 주소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적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주소는, 여성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 여성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이 주소를 선택할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여성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여성이 고유한 출입국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10. 타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는 이주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파트너,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b)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c)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d)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e)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f)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g)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h)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 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논평

공적 및 사적 생활

11. 역사적으로, 공적 및 사적 생활에서 인간의 활동은 다르게 고찰되어 왔고 그에 상응하여 규율되어 왔다. 모든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적인 혹은 가정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여성은 오랫동안 그들의 활동이 열등한 것으로 취급받아 왔다.

12. 그러한 활동은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매우 귀중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여성에게 상이하고 차별적인 법률 혹은 관습을 적용할 수 있는 정당성은 있을 수 없다. 당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법률상의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그로 인해 여성은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평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법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곳에서도, 모든 사회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동 협약 제2조, 5조, 24조, 특히 제16 조상의 정의와 평등의 원칙은 침해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

13. 가족의 형태와 개념은 국가마다, 심지어 한 국가내의 지역 간에도 다양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든, 국가의 법적 체계, 지역, 관습 혹은 전통이 무엇이든 간에 가족 내에서 여성에 대한 대우는 법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모두 동 협약 제2조에서 요구한 대로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일부다처 혼(婚)

14. 당사국의 보고서들은 또한 많은 국가들에서 일부다처제가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부다처 혼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할 권리에 위배되고, 여성과 그들의 피부양인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지되고 금지되어야만 한다. 동 협약은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일부 당사국들에서 사(私)법(personal) 혹은 관습법의 형태로 일부다처 혼이 허용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동 협약 제5조 (a)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16조 1항 (a) 및 (b)

15.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 헌법과 법률이 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관습과 전통 그리고 이러한 법률 이행의 실패는 동 협약에 위배되고 있다.

16.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는 여성의 삶과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존엄과 평등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당사국의 보고서 검토해 보면 관습, 종교적 믿음 혹은 특정 인종 집단의 민족적 기원 등에 근거한 강제 결혼이나 강제 재혼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혼인이 금전의 지급이나 신분상승을 위하여 계획되는 것이 허용되고, 한편으로 가난한 여성들은 재정적 안정을 위하여 외국인과 결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여성의 연령 혹은 상대 남성과의 친족관계 등의 근거에 따른 합리적 제한을 두고, 여성이 혼인 시점, 혼인 여부, 혼인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고 실행되어야만 한다.

제16조 1항 (c)

17. 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동 협약상의 원칙들을 준수하기 보다는 보통법의 원칙들, 종교 혹은 관습법의 적용에 의하여 기혼자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인과 관련된 법과 관행의 다양성은 여성에게 혼인관계 내에서 여성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갖는 것을 변함없이 제한하는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한 제한은 종종 남편이 가족의 가장 및 최고 결정권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이는 동 협약의 규정에 위반된다.

18. 더욱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혼인은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에 놓인 여성은 가정생활 및 수입과 자산을 공유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녀와 가족 구성원들을 양육하고 돌보는데 있어서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제16조 1항 (d) 및 (f)

19. 제5조 (b)에 규정된 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 부양하는데 있어서 부모가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총회 결의 44/25, 부속서)에 포함되어 왔고 현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국가는 아동의 부모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결합하의 자녀들은 항상 혼인중의 자녀들과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모(母)가 이혼하였거나 별거중인 경우 많은 부(父)는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 부양의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

20. 동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책임의 공유는 법과 후견인과 피후견인, 신탁, 입양의 법적 개념들을 통하여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혼인의 지위 및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양쪽 부모 모두가 그들의 자녀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

도록 국내법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1항 (e)

21.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책임은 여성이 교육, 고용 및 자기 개발에 관련된 다른 활동들에 접근할 권리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또한 여성에게 불평등한 과업의 부담을 준다. 자녀의 수와 터울도 여성들의 생활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자신의 자녀들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 일부 보고서는 강제적인 임신, 낙태 혹은 불임 시술과 같이, 여성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강압적인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배우자나 파트너와 상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부모, 파트너 혹은 정부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피임 수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은 동 협약 제10조 (h)에 규정된 대로 피임 수단과 그 용법, 성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그리고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한다.

23. 출생률의 자발적 규제를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으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 개발, 복지가 증진된다는 데 대한 일반적인 동의가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보건의 일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증가에 대한 자발적인 규율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룩하도록 한다.

제16조 1항 (g)

24. 안정된 가정은 평등, 정의 그리고 각 구성원의 개인적인 자기실현원칙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각의 일방은 동 협약 제11조 (a), (c)에 규정된 대로, 자신의 능력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나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각각의 일방은 자신의 이름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의 개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구별 지을 수 있게 된다. 법 혹은 관습을 통해서 여성이 혼인이나 그 해소 시에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그 여성은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 된다.

제16조 1항 (h)

25. 이 조항에 규정된 권리는 제15조 2항의 권리와 중첩되고 그 권리를 보충하는데, 제15조 2항은 여성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26. 제15조 1항은 법 앞의 양성 평등을 보장한다. 재산을 소유, 관리,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여성이 재정적 독립을 향유하도록 하는 여성 권리의 핵심이며, 많은 국가에서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적절한 주거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이다.

27. 농지개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종족적 기원을 가진 집단들에게 토지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토지를 재분배 받을 수 있는 여성의 권리는 신중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28.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비율의 여성이 미혼이거나 이혼을 하였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 남성이 혼자 가족인 여성과 아동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고 이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산의 분배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불평등도 명백히 비현실적이다. 결론적으로 혼인, 사실혼 관계의 해소 혹은 친족의 사망에 기해 남성이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하도록 보장하는 어떠한 법이나 관습도 차별적이며, 여성이 그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며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에 심각한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이다.

29. 이상의 모든 권리는 여성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부부 재산

30. 혼인 중 혹은 사실혼 관계 중 그리고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남편과 재산을 균등한 지분을 소유할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권리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여성의 능력은 법적 선례나 관습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31. 여성에게 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법원이 그것을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 혹은 이혼 시에 여성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남성에 의해 관리되게 될지도 모른다. 부부 공동 재산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혼인 중 혹은 사실혼 관계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매매되거나 처분되었을 때 여성과 상의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가 없다. 이것은 재산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수입의 처분에 대한 여성의 통제능력을 제한한다.

32. 일부 국가에서는 부부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혼인 중 획득 재산에 대한 재정적 기여가 더욱 강조되는 반면, 자녀 양육, 연장자인 친족 봉양 및 가사부담의 이행과 같은 여타의 기여는 축소된다. 아내가 행하는 그러한 비재정적 기여들은 남편으로 하여금 소득과 재산증식활동을 가능케 한다. 재정적 및 비재정적 기여는 동일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33. 많은 국가에서 사실혼 관계 중 축적된 재산은 법률상 혼인 중 획득된 재산과 동일한 토대에서 취급되지 않는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면, 변함없이 여성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몫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의 존재와 무관하게 기혼 혹은 미혼 여성에 대하여 차별적인 재산법 및 관습은 폐지되고 방지되어야 한다.

상속

34. 당사국의 보고서에는 동 협약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884D(X X X IV)에 규정된 대로 여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속법에 관련된 법적 또는 관습 규정들에 대한 논평을 수록하여야 한다. 동 이사회의 상기 권고에는 국가들이 고인과의 관계에서 동일

한 지위에 있는 여성과 남성이 재산에서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동일한 승계 순위를 부여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 규정은 일반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35. 상속 및 재산권에 관하여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과 관행이 존재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불공평한 취급의 결과로, 여성은 남편 혹은 부(父)의 재산에 대하여 남성이나 아들이 받게 되는 것보다 더 적은 지분을 받게 된다. 일부 경우에, 여성은 제한적이고 통제된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고인의 재산으로부터만 수입을 얻게 된다. 종종 미망인의 상속권은 혼인 중 획득 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소유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한 규정들은 동 협약에 위반되고 폐지되어야 한다.

제16조 2항

36.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에 걸쳐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은 국가들이 여성 아동을 차별하고 그들에 위해를 가하는 현재의 법과 규정들은 폐지하고 관습과 관행들은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16조 2항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규정들은 당사국이 미성년자들 간의 혼인을 허용하거나 그에 유효성을 부여하는 것을 금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문맥에서, “아동이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성년을 더 어린 나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와 비엔나 선언의 규정들을 유념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혼인의 최소 연령이 18세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혼인할 때, 그들은 중대한 책임에 직면한다. 결론적으로 혼인은 그들이 완전한 성숙과 행위 능력을 갖추기 전에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성년자 특히 소녀가 혼인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는 경우, 소녀의 건강 상태는 나빠지고 교육은 지연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여성의 경제적 자치권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37. 이것은 단지 여성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성의 기능 개발과 독립을 제한하고 고용 기회를 축소시키며 그로 인하여 그 여성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38. 일부 국가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혼인 적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은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지적 개발 속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혼인과 여성의 신체적, 지적 발전 정도가 무관하다고 하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여아의 약혼 혹은 가족 구성원이 대신하는 성혼이 허용된다. 그러한 행위들은 동 협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성의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에도 반한다.

39. 당사국은 또한 민사적으로 체결된 것이든 혹은 관습이나 종교법에 따른 것이든 간에 모든 혼인의 등록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는 그를 통해서 동 협약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고 부부간 평등, 혼인 최소 연령, 중혼과 일부다처혼의 금지 및 아동의 권리 보호를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권고

여성에 대한 폭력

40. 가족생활에서의 여성 지위를 고려해 볼 때, 본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19(제11차 회기)의 규정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에게 공적 및 가족생활 모두에서,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해하는 성에 근거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보장하는 일반권고를 준수하도록 촉구한다.

유보

41. 본 위원회는 제16조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유보를 하는, 특히 제2항을 유보하는 경우에, 당사국들을 경계하며 주목하여 왔는데, 그러한 당사국들은 상기 조항의 준수가 특히 문화적, 신앙적 신념 혹은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기초하여 가족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와 충돌된다고 주장한다.

42. 이러한 국가들 중 다수는 부(父), 남편, 아들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다. 근본주의자나 다른 극단주의자적 견해 혹은 경제적 궁핍이 구 가치관과 전통으로의 회귀를 조장해 온 일부 국가들에서, 가족 내 여성의 지위는 급격하게 실추되어 왔다. 현대 사회가 그 사회의 경제적 진보와 공동체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성인을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온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금기들과 보수적 혹은 극단적인 견해들이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왔다.

43. 제2조, 3조 및 특히 24조와 일치하여,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가정에서의 여성 불평등 관념을 단호하게 제거함으로써, 각국이 특히 동 협약 제9조, 15조 및 16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상태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다.

44. 당사국은 법이나 종교적, 사적 법규 혹은 관습에 의해 형성된 양성 불평등의 어떠한 관념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하고, 특히 제16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최초 보고서와 후속 정기 보고서들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본 위원회는 유보와 일정 법률, 특히 가족을 다루는 법 없이 동 협약을 비준하거나 그에 가입한 일부 당사국이 실제로는 동 협약의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6. 그 국가들의 법은 규범, 관습, 사회문화적 편견에 기초하여 여성에 대한 다수의 차별적 조치들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이러한 조항들과 관련한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가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47. 본 위원회는, 특히 동 협약의 제1조와 2조에 기초하여, 그러한 당사국이 본 문제와 관련한 사실적 상황을 검토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국의 입법에 대하여 요청되는 조치들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행하도록 요구한다.

보고서

48. 본 일반권고의 논평을 참조하여, 보고서에서 당사국들은:

- (a) 특히 제16조에 대한 유보 및 동 협약에 대한 모든 유보의 철회를 위한 자국의 진전 정도를 표시하여야 하고,
- (b) 자국의 국내법이 제9조, 15조 및 16조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종교적, 사회적 법규 혹은 관습을 이유로 법률과 동 협약의 준수가 지연되고 있는 분야들을 나타내야 한다.

입법

49. 당사국은 동 협약의 준수, 특히 제9조, 15조 및 16조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 협약의 준수에 대한 촉구

50. 본 일반권고의 논평들을 참조하고 제2조, 3조 및 24조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당사국, 특히 종교적, 사회적 법규 혹은 관습이 이러한 원칙들과 충돌하는 국가들은 동 협약상 원칙들의 충실한 준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조치들을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차 회기 (1995)*

일반권고 22: 동 협약 제20조의 개정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총회의 요구에 따라 동 협약 제20조 수정을 위하여 1995년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주목하고,

제10차 회기에서 채택한 이전의 결정이, 위원회 업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예기치 못한 잔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동 협약이 가장 많은 수의 당사국들에 의해 비준된 국제 인권 협정서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하고,

동 협약 조항들이 개인 일상의 모든 부분과 사회 모든 영역 및 국가에서 여성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부속서 I 에 반영된 대로, 상정이 계류된 보고서의 잔무뿐만 아니라 비준 증가로 인한 본 위원회의 업무 부하를 우려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당사국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그로 인해 보고서를 갱신하기 위해 국가들이 추가 정보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 문서 A/50/38에 포함.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가 그 협약에 의해 한정된 회기를 가지는 유일한 인권 조약 기구이고, 부속서 II에 반영된 대로 모든 인권 조약 기구들 중 가장 단기의 회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동 협약에 규정된 회기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 동 협약에 따른 본 위원회의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며,

1. 총회가 결정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동 협약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기간을 매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이 본 위원회의 회의 기간에 대한 동 협약 제20조의 개정을 우호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 또한 개정 과정의 완료가 계류 중인 동안, 총회는 본 위원회가 예외적으로 1996년에는 두 차례의 회기를 개최하도록 하는데, 각각은 3주간의 회의 기간을 갖고 각 회기 전 실무 그룹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3. 나아가 당사국 회의는 기능 수행에 있어 본 위원회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4.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업무부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와 다른 인권 조약 기구들에 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제16차 회기 (1997)*

일반권고 23: 정치적 및 공적 생활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특히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a) 모든 선거와 국민 투표에서의 투표권과 공적인 선출 기구의 선거에 출마할 권리.
- (b) 정부 정책의 형성과 정책의 이행에 참여할 권리 및 모든 수준의 정부 활동에서 공직을 가지고 공적 기능을 수행할 권리.
- (c)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관련된 비정부기구와 단체에 참여할 권리.

배경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국가의 공적 생활에 여성의 참여에 대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동 협약의 전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 속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고하고.”

* 문서 A/52/38에 포함.

2. 나아가 동 협약은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3. 나아가 동 협약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 없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4. 다른 협약, 선언 및 국제적 분석은 공적 생활에 대한 여성 참여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평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틀을 제시해 왔다. 이에는 세계인권선언¹,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²,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³, 비엔나 선언⁴, 베이징 선언 13항과 행동 강령⁵, 동 협약 하의 일반권고 5 및 8⁶,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 논평 25⁷,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하여 유럽 연합 이사회가 채택한 권고⁸ 및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정책 결정에서 성적 균형을 이룩하는 법”⁹이 포함된다.

5. 제7조는 당사국에게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여성이 정치적 및 공적 영역에서 남성과 같은 평등을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7조에 규정된 의무는 정치적 및 공적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고 하부조항 (a), (b) 및 (c)에 규정된 분야로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은 폭넓은 개념이다. 이는 정치권력, 특히 입법, 사법, 집행 및 행정 권력의 행사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국제적, 국내적, 광역적, 지역적 수준의 공공 행정 및 정책의 입안과 이행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개념은 또한 공의회, 지역 위원회

및 정당, 노동조합, 직종별·산업별 협회, 여성단체, 공동체 기구,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관련된 기타 기구와 같은 조직들을 포함하는 시민 사회의 여러 양상들을 포함한다.

6. 본 협약은 평등이 효과적이라면, 세계인권선언 제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5조와 같은 국제적 인권 협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시민이 보통 선거와 비밀 선거의 기초 위에 행해지는 정기 선거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것을 보장받는 정치 체제의 틀 안에서 이러한 평등이 달성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7. 공적 생활과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와 기회 평등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 협약이 강조함으로써 인하여 본 위원회는 동 협약 제7조를 검토하고 당사국들이 국내법과 정책을 재검토하며 동 협약에 기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였고, 당사국들은 이하의 논평과 권고들을 고려해야 한다.

논평

8. 인간 활동의 공적, 사적 영역은 항상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늘 여성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사적 혹은 가정적 영역의 일을 부여받아 왔고, 모든 사회에서 이러한 활동은 하위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와 반대로 공적 생활은 존중받고 명예로운 것으로서 사적, 가정적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확장된다. 역사적으로 남성은 공적 생활을 지배하고 여성을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 종속시키는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9.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여성의 역할과 발전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그들의 일상생활 방식과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적 생활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특히 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배제는 여성을 침묵시키고 여성의 기여와 경험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10. 모든 국가들에서, 여성이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은 문화적인 가치관 구조와 신앙, 제도의 부재, 가사와 자녀 양육 부담을 남성이 공유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모든 국가들에서 문화적 전통과 종교적 신념은 여성을 사적 영역의 활동에 한정시키고 공적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배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11. 여성의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여성이 좀 더 공동체 생활에 참여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여성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없게 하고 공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 가사 일과 경제적 의존이라는 이중 부담은, 공적 및 정치적 업무가 변동이 불가능한 장시간의 투입을 요구한다는 점과 함께 여성이 더욱 적극적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

12. 매체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정형화는 정치에 있어서 여성을 환경, 아동, 보건 등과 같은 문제에 한정시키고 재정, 예산통제, 갈등해결에 대한 책임에서 여성을 배제시킨다. 정치인이 배출되는 직업군들에 대한 여성의 진출 부족은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 지도자가 정권을 가진 나라에서는, 이것이 여성 자신의 권리에서 도출된 선거 승리보다는 여성의 부(父), 남편 또는 남성 친족의 영향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정치 체제

13. 양성 평등 원칙은 대부분 국가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모든 국제적 문서들에서 확인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동안, 여성은 평등을 획득하지 못하였고 여성 차별은 공적, 정치적 생활에 대한 낮은 참여도에 의해 심화되어 왔다. 남성 단독으로 개발한 정책과 결정은 인간 경험과 잠재력의 일부분만을 반영한 것이다. 정당하고 효과적인 사회 조직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포섭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14. 어떠한 정체 체제도 동등하고 완전한 참여의 권리와 이익을 여성에게 부여하지 못하여 왔다.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 생활에 대한 여성의 참여 기회를 개선하여 왔지만, 여성이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들이 여성의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해 온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볼 때, 안정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의견과 이익을 완전하고도 평등하게 통합하는데 실패해 왔다. 여성이 공적 생활과 정책 결정에서 배제된 사회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오직 정치적 정책 결정이 여성과 남성에 의해 공유되고 양성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할 때만이 진정하고도 역동적인 의미와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면, 공적 생활과 정책 결정에 대한 여성의 충분하고도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여성 권리의 이행과 동 협약의 준수가 증진되는 것을 보여준다.

잠정적 특별 조치

15. 법적인 장벽의 제거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의도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남성을 무심코 장려하는 구시대적인 관행과 절차들의 결과일 수 있다. 동 협약 제4조에 따라, 동 협약 제7조, 8조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잠정적 특별 조치의 사용을 장려한다. 평등한 참여를 이룩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잠정적 전략들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인력채용, 재정보조, 여성지원자 훈련, 선거절차 개정, 평등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개발, 법관 혹은 모든 사회생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군과 같은 공적 지위에 대한 여성 채용 목표제, 할당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다. 장벽의 공식적인 제거와 공적인 사회생활에서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는 잠정적 특별 조치의 도입은 정치적 생활에서 진정한 평등을 이룩하는 핵심적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 대한 남성의 수세기에 걸친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에게는 정당과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동 협약의 당사국이 행하는 완전하고 실효적인 여성 참여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한 격려와 지원이 요구된다. 당사국은 잠정적 특별 조치가 평등 원칙을 지원하고 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

칙들을 준수하는데 확실히 기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개요

16. “베이징 행동 강령”⁵에서 강조되었던 중요한 문제는, 법적 상태와 사실적 상태 사이의 간극 혹은 일반적인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여성 참여의 현실에 대한 권리이다. 조사에 의하면, 만약 여성 참여가 30 내지 35%에 이르게 된다면(일반적으로 “임계 수치”라고 일컫는다), 정치 유형과 결정의 내용들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게 되고 정치적 생활이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한다.

17. 공적 생활에서 폭넓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평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즉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하여야만 여성이 평등, 발전, 평화 달성과 같은 목표에 대한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장 되려면 성의 관점이 결정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이 기여하는 장점을 취하고 그들의 이익 보호를 보장하며 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인권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생활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성의 완전한 참여는 여성에 대한 권력 부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투표권 및 피선거권 (제7조 (a))

18. 동 협약은 당사국이 헌법과 법률에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는 토대 위에서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상 또 사실상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

19.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헌법적으로 혹은 다른 법률들을 통하여 모든 선거와 공적인 국민 투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여성이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이러한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 여성은 후보자, 정당의 정강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정보나 정부와 정당이 제공하지 못한 정보에 대하여 남성보다 더 낮은 접근성을 갖고 있다. 여성이 완전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실현하는 것을 저해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에는 여성의 문맹과 정치 체제에 대하여 혹은 정치적 주도권과 정책이 자신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참정권에 의해 주어지는 권리, 책임, 변화의 기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여성이 언제나 투표인 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 (b) 재정적 제한과 더불어 여성이 지게 되는 노동의 이중고는 여성이 선거 운동에 관심을 유지하고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완전한 자유를 가질 시간과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 (c)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 사회적, 문화적 고정관념은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많은 남성들은 설득이나 여성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행위를 포함한 직접적인 행위를 통하여 여성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통제한다. 그러한 관행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 (d) 일부 국가에서, 여성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적 혹은 정치적 생활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다른 요소들에는 여성의 이주의 자유 또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하여 만연된 부정적 태도로 인한 참여권에 대한 제한, 유권자들의 여성 후보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부족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일부 여성들은 정치 진출에 관여하는 것을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운동에 대한 참여를 피한다.

21. 이러한 요인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전 유권자의 절반을 대표하는 여성이 그들의 정치권력을 주장하지 않거나 혹은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정권을 교체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정책을 제거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지 않는 모순을 설명한다.

22. 비밀선거, 의석분배, 선거구 선택 등의 체제는 모두 의회로 선출되는 여성의 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당들은 기회 균등과 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여야 하고 남성과 여성 후보자의 수적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3. 여성의 투표권 행사는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주는 제한이나 조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의 재산적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여성에 대하여 불평등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동 협약의 규정들을 위반하게 된다.

정부 정책 입안에 참여할 권리 (제7조 6항)

24.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부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평등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25. 제7조 (b)는 또한 당사국이 여성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공적인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대표할 것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성적인 문제들을 주류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공적인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균형적인 성의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26. 당사국은 그들이 통제하는 경우에 여성을 정책 결정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임명하고 당연히, 여성의 관점과 이익을 폭넓게 대변하는 집단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수용할 책임을 진다.

27. 당사국은 더 나아가 정부 정책 입안에 대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밝히고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러한 장애요인에는 명목상 여성을 임명하고 갖는 자기만족과 여성 참여를 저해하는 전통적, 관습적 태도가 포함된다. 여성이 정부 내 관리자 지위에서 폭넓게 대표되지 않거나 여성이 부적절하게 혹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 정부 정책은 종합적이지도 실효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28.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내각과 행정부의 고위직에 여성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당 역시 여성을 정당 명부에 등재시킬 것과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여성을 후보 지명할 책임을 지고 있다. 당사국은 여성이 정부 자문 기구에 남성과 동등한 기반 하에 임명되도록 하고 이러한 기구들이 적절하게 여성을 대표하는 시각들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을 통해 여론을 지도하고 이끌며 여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를 저해하는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장려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임이다.

29. 내각과 행정부의 고위직 및 정부 자문 기구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수 당사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조치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잠재적 피지명자들이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여성 후보자를 우선하는 규칙의 채택; 한 성(性)이 공공 기구 구성원의 40%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의 채택; 내각과 공직 임명에 있어 여성 할당제; 공공 기구와 공공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격 있는 여성 후보가 지명되도록 여성 단체와의 협의 및 공공 기구나 지위에 대한 임명 시 여성 후보 추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여성의 명부를 작성하고 유지하는 것. 사적 단체의 후보 추천에 따라 자문 기구의 구성원이 임명될 때, 당사국은 그런 단체가 자격 있고 적합한 여성을 자문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추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공직을 가질 권리 및 모든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제7조 (b))

30.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여성은 내각, 공무원직 및 공공 행정, 사법부와 사법 체제의 최고위직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좀처럼 이러한 관리직 또는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임명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하위 직

급과 보통 가정 및 가족에 관련된 지위에 임명되는 여성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 정책 혹은 개발, 정치적 업무, 국방, 평화유지 임무, 분쟁 해결 혹은 헌법적 해석과 결정에 관련된 의사 결정 지위에 임명되는 여성은 극소수이다.

31.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왕권을 보유하고, 종교 혹은 국가를 대신하여 관할권을 부여받은 전통적인 재판소의 판사가 되거나 군대에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성을 차별하고 공동체 생활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기술로부터 사회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동 협약의 원칙들에 위배된다.

비정부 기구와 공적, 정치적 기구에 참여할 권리 (제7조 (c))

32.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정당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 드문 경우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불충분하게 대표되고 영향력이 적은 역할 수행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당으로 하여금 정당 활동에 여성이 완전하고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당은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대표에 대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 재정, 기타 자원의 제공을 포함한 실효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며, 여성이 정당 사무직에 종사하고 선거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하는 평등한 기회를 사실상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33. 일부 정당이 채택한 조치들에는 여성을 위해 정당 집행기구의 일정 최소 의석이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 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 여성이 일관되게 불리한 선거구나 정당 명부상 가장 하위에 배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잠정적 특별 조치들이 특별히 반차별 입법이나 다른 헌법적 평등 기준 하에서 허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4. 노동조합 같은 다른 기구들과 정당은 정관, 그러한 규칙의 적용 및 그 집행 기구가 성별 균형을 이루어 대표되어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기구가 여성이 사회 모든

부문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기여함을 통하여 이익을 얻도록 하고, 양성 평등에 대한 약속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이런 기구들은 비정부 기구가 그러하듯이, 여성이 정치적 기술, 참여 및 지도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귀중한 훈련의 장을 제공한다.

제8조 (국제적 수준)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자국의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35. 제8조에 의하면, 정부는 모든 수준, 모든 영역의 국제적 사무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에는 경제적, 군사적 사안, 다자 및 양자 외교, 국제적, 지역적 회의에 대한 공식 대표단 파견이 포함된다.

36.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총체적으로 대다수 정부의 외교 및 대외 업무, 특히 최고위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국가의 대외관계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대사관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경우에 여성은 혼인 상태를 이유로 한 제한으로 인해 임명에서 차별받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남성 외교관의 배우자와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동일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도 한다. 국제 업무에 여성이 발탁될 기회는, 여성이 부양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수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 등, 여성의 가정적 책임에 대한 억측을 이유로 종종 거부되기도 한다.

37.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의 많은 상주 대표단에는 여성 외교관이 없고 관리자 직급에도 극소수의 여성만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 전 지구적 목표와 의제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문가 회의나 협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유엔 기구와 지역적 수준의 다

양한 경제, 정치, 군사 기구들은 중요한 국제적 고용주가 되었으나, 역시 여기에서도 여성은 하위 직급에 집중된 소수 집단으로 남아 있다.

38.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조건에서, 국제적 수준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기구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는 관련 직책 및 공적 대표단으로의 임명과 승진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부재한 데서 기인한다.

39. 현대의 세계가 세계화됨에 따라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진출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졌다. 모든 국제기구의 의제에 성 인지적 관점과 여성 인권을 통합시키는 것은 각 정부의 의무이다. 평화 유지, 분쟁 해결, 군비 축소 및 비핵화, 개발, 환경, 대외 원조, 경제 제재와 같은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한 많은 중대한 결정들이 한정된 여성의 참여 속에서 내려진다. 이는 비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확실히 대조적인 것이다.

40. 국제 협상, 평화 유지 활동, 예방 외교의 모든 차원, 중재, 인도적 원조, 사회적 화해, 평화 협상 및 국제 형사 사법 체제 등에 상당수의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무력 충돌을 비롯한 기타 분쟁의 처리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과 분석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서로 다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¹⁰

권고

제7조 및 8조

41.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이 동 협약의 원칙들, 특히 제7조 및 8조를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2.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을 준수하는 적절한 법률의 제정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정당과 노동조합 같은 조직들이 동 협약 상 의무의 직접적인 대상을

아닐지라도 여성 차별을 하지 않고 제7조 및 8조상의 원칙들을 존중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3. 당사국은 제7조 및 8조가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잠정적 특별 조치들을 도입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4. 당사국은 제7조 혹은 8조에 대한 어떠한 유보에 대하여도 그 이유와 효력을 설명하여야 하고, 그 유보가 반영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 관습적 혹은 고정관념적인 태도들과 그러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이 행하는 조치들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유보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밀한 재검토를 하며 자국의 보고서에 그 유보의 철회를 위한 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45. 제7조 (a)에 따라 실효성을 위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감시해야 하는 조치들에는 다음에 기술된 목적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 (a) 공적인 선출직을 차지하게 되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균형을 확보.
- (b) 여성이 자신의 투표권의 존재와 중요성 및 권리 실현 방법을 파악하고 있도록 보장.
- (c) 문맹, 언어, 빈곤, 여성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장애를 포함하여, 평등에 대한 장애요인 극복을 보장.
- (d)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불이익을 경험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

46. 제7조 (b)에 기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에는 다음 사항들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 포함된다.

(a) 정부 정책 입안에 있어서 여성 대표성의 평등.

(b) 여성의 평등한 공무담임권의 실제적 향유.

(c) 여성에게 개방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용과정.

47. 제7조 (c)에 기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에는 다음의 목적을 가진 조치들이 포함된다.

(a) 여성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실효적 법률 제정을 보장.

(b) 비정부 기구와 공적 및 정치적 단체들이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도록 독려.

48. 제7조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제7조에 규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규정들을 기술할 것.

(b) 법적 규정 혹은 전통적, 종교적, 문화적 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들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들의 세부사항을 제공할 것.

(c) 이들 권리 실현에 대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고 계획된 조치들을 기술할 것.

(d) 이들 권리를 행사하는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비율을 보여주는 성별로 분류된 통계 자료를 포함시킬 것.

(e)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책을 포함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정책 입안의 유형과 참여의 수준 및 정도를 기술할 것.

(f) 제7조 (c)에 기하여, 여성단체를 포함하여 자국 내 비정부 기구에 대한 여성 참여의 범위를 기술할 것.

(g) 당사국이 이들 기구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범위와 그들의 자문이 모든 수준의 정부 정책 입안과 이행에 있어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대하여 분석할 것.

(h) 정당,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및 직업 단체의 회원이나 직원으로서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한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된 요인을 분석할 것.

제8조

49. 실효성을 위해 규정되고 시행되며 감시받아야 하는 조치들에는, 유엔 총회의 주요 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 전문 기구, 조약 기구를 비롯한 모든 유엔 기구 회원 자격과 독립적인 실무 그룹, 국가 보고관이나 특별 보고관으로의 임명에 있어서 더 나은 성인지적 관점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치들이 포함된다.

50. 제8조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자국의 외교 업무나 통상적인 국제적 대표 혹은 국제회의의 정부 대표단에 포함되거나 평화 유지나 분쟁 해결 역할에 지명되는 등의 국가를 대표하는 업무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과 그 직위의 선임 여부를 보여주는 성별로 분류된 통계를 제공할 것.

(b) 공식 대표단 및 관련 직위에 대한 여성의 임명과 승진을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술할 것.

(c)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국제적인 약속에 대한 정보와 다자 포럼, 특히 여성 발전을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및 비정부 기구가 출판한 공식 문서를 널리 유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을 기술할 것.

(d) 개인 자격으로든 여성단체나 혹은 다른 조직의 구성원 자격으로든, 여성의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한 여성 차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

주(註)

¹ 총회 결의 217 A (III).

² 총회 결의 2200 A (XX I), 부속서.

³ 총회 결의 640 (VII).

⁴ 세계인권회의 보고서, 비엔나, 14-25 6월 1993 (A/CONF.157/24(Part I)), 제III장.

⁵ 제4차 세계여성회의 보고서, 베이징, 4-15 9월 1995 (A/CONF. 177/20 및 Add.1), 제 I 장, 결의 1, 부속서 I.

⁶ 총회 공식 기록, 제43차 회기, 부록 No. 38 (A/43/38), 제 V 장.

⁷ CCPR/21/21/Rev.1/Add.7, 27 8월 1996.

⁸ 96/694/EC, 브뤼셀, 2 12월 1996.

⁹ 유럽 위원회 문서 V/1206/96-EN (3월 1996).

¹⁰ 1995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 강령 141항 참조 (A/CONF.177/20, 제 I 장, 결의1, 부속서II). 또한 134항의 부분 참조: “권력 구조에서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 및 분쟁 해결과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에 있어서 여성의 충분한 진출은 평화와 안전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제20차 회기 (1999)*

일반권고 24: 동 협약 제12조(여성과 보건)

1.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출산 보건을 포함한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권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상의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제20차 회기에서 제21조에 따라 동 협약 제12조에 관한 일반권고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배경

2. 당사국의 동 협약 제12조 준수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의 핵심이다. 본 조는 당사국들이 여성이 일생에 걸쳐, 특히 가족계획, 임신과 출산 및 산후기간 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협약 제18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여성 건강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있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일반권고는, 당사국 및 여성 건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12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이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여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차별을 제거하는 조치들을 다루고자 한다.

3. 최근 유엔 세계 회의는 이러한 목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일반권고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회는 유엔 세계 회의, 특히 1993년 세계인권회의와 1994년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1995년 제4차 세계 여성 회의가 채택한 관련 행동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 본 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TO), 유엔인구기금(UNFPA) 및 다른 유엔 기구들의 업무에 또한 주목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번 일반권고를 준비함에 있어 여성 보건 분야

* 문서 A/54/38/Rev.1, 제 I 장에 포함.

의 특별 전문가로 구성된 다수의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왔다.

4. 본 위원회는 다른 유엔 문서들이 보건권과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대한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한 문서에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및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있다.

5. 본 위원회는 또한 이전에 여성 할례, 면역결핍 바이러스/후천성 면역결핍증(HIV/AIDS), 장애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일반권고를 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동 협약 제12의 완전한 이행에 필수적인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6.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건강 상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남녀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건강 상태가 다양할 수 있는 사회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이주 여성과 난민여성, 국내 피난민 여성, 소녀와 노인여성, 매춘 여성, 토착민 여성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여성과 같이 취약하고 불리한 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보건 상 필요와 권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 본 위원회는 여성 보건권의 완전한 실현은 오직 당사국들이, 안전하고 영양이 충분하며 지역적 조건에 적합한 식량 공급을 통하여 일생동안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시킬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임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특히 시골 여성을 위하여 생산 자원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권 내의 모든 여성의 특별한 영양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12조

8. 제12조는 다음과 같다: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일생에 걸친 여성의 건강 문제를 다루도록 권유받는다. 따라서 이 일반권고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는 소녀와 성인이 모두 포함된다. 이 일반권고는 본 위원회의 제12조의 핵심 요소에 대한 분석을 설명할 것이다.

핵심 요소

제12조 1항

9. 당사국은 자국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보건 문제에 대하여 보고할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가 보건 분야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질병의 발생과 심각성, 여성 건강과 영양 상태를 해치는 환경, 예방적, 치료적 조치들의 유효성과 비용적 실효성에 관하여 성별로 분류된 신뢰할 만한 자료와 함께, 아울러 여성을 위한 보건 입법, 계획 및 정책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보건 입법, 계획 및 정책이 과학적이고도 윤리적인 조사와 자국 여성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고, 모든 인종, 지역 혹은 공동체 간의 편차나 종교, 전통, 문화에 기초한 관행들을 고려하였다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10.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 남성과는 달리 여성이나 특정 여성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질병, 보건 환경, 건강에 해를 미치는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개입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11. 만약 어떤 보건 의료 체제에서 여성에 대한 특수 질병을 예방, 발견, 치료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국이 여성을 위한 특정 출산 보건 서비스의 실행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이 양심적 반대에 기초하여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한다면, 여성을 다른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개하도록 하는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12. 당사국은 보건 의료에 관한 정책과 조치들이 여성의 필요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의 보건권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남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을 구별하는 특징적 양상과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국이 파악한 바를 보고하여야 한다.

(a)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을 구별하는 여성의 생리 주기, 여성의 출산 기능 및 폐경기와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들. 또 다른 예로서 여성이 직면한 성병에 대한 더 높은 노출 위험.

(b) 여성 일반에게 특히, 일부 여성 집단에게 달라지는 사회·경제적 요소들. 예를 들어 가정과 직장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여성의 영양과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은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여아와 청소년기 소녀는 자신들을 신체적, 심리적 위협의 위험과 원치 않는 임신, 조기 임신의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의 연장자인 남성과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적 학대에 취약하다. 여성 생식기 절단과 같이 일부 문화적 혹은 전통적 관행들은 사망, 불구와 같이 고도로 위험한 상태를 초래한다.

(c) 남녀에 따라 달라지는 심리적 요소들은 일반적으로는 우울증, 특별한 경우 산후 우울증과 여타 거식증 및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심리적 상태

를 포함한다.

- (d) 환자의 비밀 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는 하나, 그것은 여성이 진찰과 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하여 여성의 보건, 복지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여성은 생식계 관련 질병, 피임 혹은 불완전한 낙태 및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은 경우에 그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을 꺼리게 된다.

13. 양성 평등의 토대 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정보제공 및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는 보건 의료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할 의무를 함축한다. 당사국은 입법, 집행 행위 및 정책이 상기 세 가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진다. 당사국은 또한 효과적인 사법 조치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의 위반이 된다.

14.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여성의 보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성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국은 어떻게 공적, 사적 보건 의료 제공자들이 여성이 보건 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존중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국은 여성이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여성이 미혼¹⁾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 파트너, 부모 혹은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적절한 보건 의료를 이용하는데 대한 다른 장애요인들에는 오직 여성에게만 필요한 의료 행위를 범죄화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들이 포함된다.

15. 여성 건강과 관련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기관과 공무원들이 사적 개인이나 조직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제제를 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에 근거한 폭력이 여성 건강에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국은 다

1) 총회 공식 기록, 제49차 회기, 부록 No. 38 (A/49/38), 제 I 장, 일반권고 21, 29항 참조.

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a) 여성에 대한 폭력,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를 다루는 보건-의료 의정서와 병원의 절차 및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법률의 제정과 그것의 효과적인 이행 및 정책 입안.
- (b)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성에 근거한 폭력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성 인지성 훈련(gender-sensitive training).
- (c)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여성 환자에 대해 성적 학대를 범한 경우 고발을 심리하고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공정하고 보호적인 절차.
- (d) 여성 생식기 절단과 여아의 조혼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과 효과적인 이행.

16. 당사국은 무력 충돌 상황에 처한 여성, 난민 여성과 같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을 위하여 정신적 외상 치료, 상담을 포함한 적절한 보호와 보건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한다.

17. 권리 이행의 의무는 당사국에게 여성이 자신의 보건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용한 자원의 범위까지 적절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예산적, 경제적 및 기타 다른 조치들을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높은 산모 사망률과 전 세계적 발병률, 산아 제한 대책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가족의 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부부의 증가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여성에게 보건 혜택의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 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제공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결핵, HIV/AIDS와 같은, 특히 예방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여성 질병의 중대성을 다루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 보건 업무를 사적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이전하여 상기 의무를 포기한다는 증거들에 대하여 우려한다. 당사국은 사적 기관으로의 권한 위임 혹은 이전을 통하여 자신의 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당사국은 공적 권한이 여성 보건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행사하는 정부 차원의 절차와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당사국은 제3자에 의한 여성 권리 침해를 억제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와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8. HIV/AIDS 및 기타 성병에 관한 문제들은 여성과 청소년기 소녀의 성 보건에 대한 권리의 핵심이다. 많은 국가의 청소년기 소녀와 여성은 성 보건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에 근거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결과로서, 여성과 청소년기 소녀는 종종 성행위를 거부하거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성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여성 성기 훼손, 일부다처제, 부부 강간과 같은 해로운 전통 관습은 소녀와 여성들을 HIV/AIDS 접촉 위험 및 다른 성병에 노출시킨다. 특히 매춘여성은 이러한 질병에 취약하다. 당사국은 편견과 차별 없이, 인신매매된 여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그들이 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 보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남녀 청소년들이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를 보장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훈련받은 사람들로부터 성 보건 및 출산 보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9.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서 제12조의 준수를 위하여, 여성이 양성 평등 원칙의 토대 위에서 보건 의료를 이용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조사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동 협약 제1조의 규정들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남성과 비교하여 보건 정책, 절차, 법률 및 의정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평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여성은 적절하게 훈련받은 사람들로부터 제안된 절차와 이용 가능한 대안책의 예상 이익과 잠재적 악영향을 포함하는 어떠한 치료나 연구에 동의함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설명 받을 권리가 있다.

21. 당사국은 여성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면하게 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들과 여성이 상기 서비스를 적시에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비용과 배우자, 부모 혹은 보건 당국의 사전 허가 요구, 보건 의료 시설까지의 원거리 및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의 부재와 같이 여성의 이용을 해하는 여건과 상황들이 포함된다.

22. 당사국은 예를 들어 여성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라 함은 어떤 여성이 완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하고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비밀유지를 보장받아 자신의 필요와 관점에 민감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국은 부동의 피임이나 의무적인 성병 검사 혹은 고용 조건으로서의 의무적인 임신 검사와 같이 정보에 근거한 동의와 존엄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압적인 형태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당사국은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는 가족계획, 일반적으로는 성 보건 및 출산 보건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의 적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가족계획에 관련한 모든 방법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포함하여 청소년 보건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²⁾

24. 본 위원회는 노인 여성을 위한 보건 서비스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은 대개 남성에 비해 수명이 길고 남성보다 더 많이 골다공증, 치매와 같은 장애나 퇴행성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은 대체적으로 연로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도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고령과 관련된 불리한 조건이나 장애를 다루는 보건 서비스를 노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청소년을 위한 보건 교육은 특히, 양성 평등, 폭력, 성병 예방, 출산 및 성 보건 권리까지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25. 장애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은 특히, 성 차별, 폭력, 빈곤, 무력 충돌, 혼란 및 기타 형태의 사회적 박탈의 결과로서 여성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정신적 건강의 위협 요소가 광범위하다는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한편 당사국은 보건 서비스가 장애 여성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고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2항

26. 보고서에는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간에 관해 여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자국 내에서, 특수 하계는 취약 집단, 지역 및 공동체 내에서 상기 조치들이 감소시킨 사망률과 발병률에 대한 정보도 실어야 한다.

27.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 필요한 경우, 그들이 어떻게 여성을 위해 안전한 임신, 출산 및 산후수유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수유기 서비스를 이용할 돈이 부족하여 임신과 관련된 원인에 의한 사망 또는 장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안전한 모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와 응급 산부인과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임을 지적하는 바이며, 당사국은 이런 서비스들이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 내에서 수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 협약의 기타 관련 조항들

28. 제12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당사국은 여성 보건과 관련된 동 협약 상 다른 조항들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조항들에는, 당사국이 가정교육에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포함시키는 것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 제5조 (b), 당사국이 동등한 교육을 보장함으

로써 여성들이 보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미성년 임신의 결과에 기인한 여학생의 학업중퇴 비율을 줄이도록 규정한 제10조, 당사국이 여성 및 소녀들에게 가족계획 관련 정보와 조언을 비롯한 가족 보건 및 복지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교육적 정보의 이용을 제공할 것을 규정한 제10조 (h), 출산 보호 조항, 임신 중 위험한 작업으로부터의 특별한 보호조치 및 유급 출산 휴가 제공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여성 보건의 보호와 근무환경에서의 안전에 관련된 제11조, 당사국이 시골 여성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적절한 보건 시설의 이용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 제14조 2항 (b), 당사국에게 적절한 질병 예방과 보건 증진을 위하여 특히 요구되는 주거, 공중위생 시설, 전력 및 용수, 운송 및 통신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h), 당사국이 여성에게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수단을 향유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제16조 1항 (e) 등이 포함된다. 제16조 2항은 조기 출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아동의 약혼 및 결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행동에 대한 권고

29. 당사국은 여성 보건을 전 생애 동안 증진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전략에는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질병과 상황의 예방 및 치료, 여성에 대한 폭력에의 대응 등을 위한 개입을 비롯하여, 지불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30. 당사국은 남성 보건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상이한 건강 상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 여성 보건 분야가 보건예산 전체에서 일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과 인적, 행정적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31. 또한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 (a) 여성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핵심에 성 인지적 관점을 두고, 그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계획과 수행, 감시 및 여성 보건 서비스 제공에 여성을 포함시킬 것.
 - (b) 성 보건 및 출산 보건을 비롯한 여성 보건 서비스, 교육 및 정보제공 이용에 대한 모든 장애요인의 제거 및 HIV/AIDS를 비롯한 성병의 예방, 치료에 대하여 청소년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에 자원을 할당하도록 할 것.
 - (c) 가족계획과 성교육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안전한 모성 서비스와 산전 지원을 통하여 산모 사망률을 감소시킬 것. 가능하다면, 낙태한 여성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조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낙태를 범죄화한 입법을 개정할 것.
 - (d) 동등한 서비스 접근권과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 비정부적, 사적 기구들에 의한 여성 보건 서비스 제공을 감시할 것.
 - (e) 모든 보건 서비스가 자치권, 프라이버시권, 비밀유지권 및 정보에 기반한 동의와 선택권을 포함한 여성 인권에 부합하도록 요구할 것.
 - (f) 보건 업무 종사자들의 훈련 교육 과정에 여성 보건과 인권, 특히 성에 근거한 폭력에 관련된 포괄적, 필수적, 성 인지적인 강의가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

제30차 회기 (2004)

일반권고 25: 동 협약 제4조 1항 (잠정적 특별 조치)

I. 도입

1.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제20차 회기(1999)에서 동 협약 제21조에 따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제4조 1항에 관한 일반권고를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새 일반권고는 특히, 일반권고 5 (제7차 회기, 1988), 잠정적 특별 조치에 관한 일반권고 8 (제6차 회기, 1988), 동 협약 제8조의 이행에 관한 일반권고 23 (제16차 회기, 1997), 동 협약의 당사국 보고서와 그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 논평 및 여성의 공적 생활에 관한 일반권고에 기초하였다.

2. 이 일반권고에서,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이행에서 당사국의 완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제4조 1항의 본질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일반권고를 국내적, 지역적 언어로 번역하고 행정 조직을 포괄하는 정부의 입법, 집행, 사법 기구들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 및 인권, 여성 단체와 기구들을 포함한 시민 사회에 널리 보급할 것을 장려한다.

II. 배경: 동 협약의 대상과 목적

3. 동 협약은 역동적인 장치이다. 1979년 동 협약이 채택된 이래, 본 위원회는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다른 행위자들과 더불어, 진보적 사고를 통하여 동 협약 조항들의 실질적 내용과 여성 차별의 특별한 성질 및 그러한 차별에 맞서는 장치들을 규명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해 왔다.

4. 제4조 1항의 범위와 의미는,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서 법적, 사실적 평등권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전체적 대상과 목적의 맥락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여성의 평등권을 존중,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행하고, 남성과 비교하여 사실적, 법적 평등을 획득한 지위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발전과 진전을 확보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5. 동 협약은 많은 국내적, 국제적 법적 기준과 규범들에서 사용되는 차별 개념을 초월한다. 그러한 기준과 규범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임의적이고 불공정한 혹은/그리고 부당한 구별에 의한 처우로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데 비해, 동 협약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로부터 고통 받아 왔고 계속 고통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6. 동 협약의 모든 실질적 조항들을 해석하는 일반적 체계를 구성하는, 제1항에서 5항 및 24항을 함께 살펴보면, 당사국이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에는 세 가지 의무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무들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단지 형식적인 법적 의무를 초월하여, 통합적인 방식과 정도로 이행되어야 한다.

7. 첫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상 직, 간접적¹ 여성 차별이 없도록 하고,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관할 소와 제재 조치 및 다른 구체책들을 통하여 공권력, 사법부, 조직, 기업 혹은 사적 개인이 자행하는 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둘째, 당사국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의 사실상의 지위를 개선할 의무를 진다. 셋째, 당사국은 개인에 의한 행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법률 및 사법적,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통해서도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성별 간 관계² 및 성에 근거한 고정관념의 고착에 관하여 다루어야 하는 의무를 진다.

8.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단순히 형식적인 법적 혹은 프로그램적 접근은 본 위원회가 실질적 평등으로 해석하는 여성의 사실적 평등을 성취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동 협약은 여성에게 동일한 기반을 제공하고 결과의 평등을 성취하도록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여성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생물학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남성과 여성 간에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환경 하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다루기 위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지 않은 처우가 요구된다. 실질적 평등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불충분한 대표성 극복 및 양성 간 자원과 권력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또한 필요하다.

9. 결과의 평등은 사실상 혹은 실질적인 평등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러한 결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양적 혹은/및 질적인 것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 동등한 소득 수준을 누리는 것, 정책 결정과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 평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여성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10.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한 여성 지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삶은 문맥적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조치들은 실질적인 기회, 제도, 체제의 변형을 위해 채택되어, 그들이 더 이상 역사적으로 결정된 권력과 생활 방식에 대한 남성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여성의 불변의 필요와 경험은, 개인 행위자나 지배적인 성 이데올로기 혹은 사회, 문화적 구조와 제도에서의 차별에 의하여 표현된 과거와 현재의 여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다른 필요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짐에 따라, 여성의 필요는 변화되거나 소멸하고 혹은 여성과 남성 공통의 필요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실상 혹은 실질적인 여성 평등의 획득을 도모하는 법과 프로그램 및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동일하지 않는 처우의 영구화를 피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12. 특정 집단의 여성은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차별의 고통과 더불어 인종, 종족 혹은 종교적 정체성, 장애, 나이, 계급, 카스트 제도 및 기타

다른 요인들과 같이 부가적인 근거에 기하여 겪게 되는 다중적 차별로부터도 고통 받게 될 수 있다. 당사국은 그러한 다중적 여성 차별과 복합적인 악영향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수한 잠정적 특별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1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더불어 유엔 체제가 채택한 다른 국제 인권 문서 및 정책 문서들은 평등 달성을 지원하는 잠정적 특별 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그 조치들에 대한 의미와 해석도 역시 다양하다. 본 위원회는 제4조 1항에 관한 이 일반권고가 용어의 명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³

14. 동 협약은 과거와 현재에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향유를 저해한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차별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사실상 혹은 실질적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동 협약에 따른 잠정적 특별 조치의 적용은 비차별과 평등이라는 규범의 예외라기보다는, 여성의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들 중 하나이다.

Ⅲ.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잠정적 특별 조치의 의미와 범위

제4조 1항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제4조 2항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A. 제4조 1항과 2항 사이의 관계

15. 제4조 1항에 따른 “특별 조치”와 제2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목적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제4조 1항의 목적은 여성이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 과거 및 현재의 여성 차별의 형태 및 효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여성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잠정적인 특징을 갖는다.

16. 제4조 2항은 생물학적인 차이를 이유로 양성에 대하여 상이한 처우를 규정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11조 3항에 규정된 과학 기술적 지식으로 재검토될 때가 오기까지는 적어도 영구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B. 용어

17. 동 협약의 준비 의사록(travaux préparatoires)에서는 제4조 1항에 규정된 “잠정적 특별 조치”를 기술하는데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다. 동 위원회 스스로 이전의 일반권고들에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당사국은 종종 “적극적 행위”, “긍정적 행위”, “적극적 조치”, “역차별” 및 “적극적 차별”과 같은 용어와 시정적, 보상적 및 촉진적 의미에서 “특별 조치”를 동일시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다양한 국가별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논쟁 및 상이한 실행으로부터 도출된다.³⁾ 이 일반권고에서, 그리고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에서 나타난 관행에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제4조 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잠정적 특별 조치”라는 용어만을 유일하게 사용한다.

3)

C. 제4조 1항의 핵심 요소

18. 제4조 1항에 따라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적 혹은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비차별 규범에 대한 예외로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잠정적 특별 조치라는 것은 여성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사국의 필수 전략의 일부라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잠정적 특별 조치의 적용이 종종 과거의 여성 차별의 영향을 개선하기는 하나,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한 지위로 향상시켜야 하는 동 협약 하의 당사국의 의무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어떠한 증거와도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 하의 조치들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당사국은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19. 당사국은 제4조 1항에 기해 여성의 사실상 및 실질적 평등을 위한 핵심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잠정적 특별 조치와 여성과 여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된 다른 일반 사회 정책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여성에게 잠재적으로 우호적이거나 혹은 장래에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잠정적 특별 조치인 것은 아니다. 여성의 삶의 존엄성과 비차별을 확보하도록 고안된 여성과 여아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 조건 규정은 잠정적 특별 조치라고 명명할 수 없다.

20. 제4조 1항은, 그러한 특별 조치들의 “잠정적인” 성질에 대하여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잠정적인”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장기간 그러한 조치들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구히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잠정적 특별 조치의 지속 기간은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응한 기능적 효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미리 정해진 경과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잠정적 특별 조치는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일정기간 유지된 경우, 중지되어야 한다.

21. “특별”이라는 용어는 인권 논의에 부합하지만, 역시 주의 깊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 용어의 사용은 차별받는 여성과 다른 집단이 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사회에 대한 참여와 경쟁을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4조 1항 입안 시 “특별”의 진짜 의미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상된 조치라는 것이었다.

22. “조치”라는 용어는 자원의 분배 및/혹은 재분배; 우대; 목표채용, 고용, 승진; 시간과 관련한 숫적 목표; 할당제 등, 입법, 행정, 집행 및 다른 제 수단, 프로그램의 지원 혹은 도달과 같은 정책과 관행 등 광범위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한 “조치”의 선택은 제4조 1항이 적용되는 맥락과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달려 있다.

23. 잠정적 특별 조치의 채택과 이행은 대상이 된 개인이나 집단의 자격 및 실력에 대한 논의와 정치, 교육, 고용과 같은 분야에서 남성보다 자격이 미비한 여성을 우선하는데 반발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잠정적 특별 조치가 사실상 및 실질적 평등의 확보하려 하므로 자격과 실력의 문제, 특히 공적, 사적 분야에서 규범적, 문화적으로 정해져 있는 성적 편견에 관해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적 및 정치적 직무에 대한 임명, 선정, 선거에는 자격과 실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정함과 선거 선택을 포함하는 기타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

24. 제1조, 2조, 3조, 5조 및 24조와 함께 이해하면, 제4조 1항은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제6조 내지 16조와 연관 지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회는 만약 그러한 조치들이 여성의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을 전반적으로 달성 혹은 특별한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하다면, 당사국은 상기 다른 조항과 연계 하여 잠정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생각한다.

IV. 당사국에 대한 권고

25.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 동 협약 제4조 1항에 따른 잠정적 특별 조치의 채택 혹은 그 결여에 관한 정보를 실어야 하고, 당사국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잠정적 특별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6. 당사국은 여성의 사실상 및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촉진할 목적을 가진 잠정적 특별 조치와, 여성과 여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택되고 이행되는 기타 다른 일반 사회 정책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잠재적으로 혹은 앞으로 여성을 이롭게 할 모든 조치가 잠정적 특별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7. 당사국은 여성의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특별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한 목표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의 배경을 분석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국내적 배경에서 특정한 목표와 관련된 잠정적 특별 조치의 잠재적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여성의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잠정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8. 당사국은 다른 조치보다는 특정 유형의 조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의 적용을 정당화하는 데는, 여성의 생활과 기회를 형성하는 조건과 영향을 비롯하여 여성 및 다중적 차별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특정 집단의 여성들의 실제 생활 상황에 대한 기술, 당사국은 특정한 잠정적 특별 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누구의 지위를 개선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조치들과 여성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반적 조치 및 노력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9. 당사국은 잠정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는 데 실패한 경우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실패는 무력함을 선언하거나 혹은 사적 영역, 조직 또는 정당과 같은 지배적인 시장이나 정치세력의 태만을 설명함으로써 간단히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당사국은 모든 다른 조항과 연계하여 불 필요가 있는 동 협약 제2조가 상기 행위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설명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30. 당사국은 몇몇 조항에 따른 잠정적 특별 조치에 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들의 법적 혹은 기타 근거 및 특정한 접근법을 선택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청된다. 나아가 당사국은 잠정적 특별 조치와 관련된 모든 입법에 대한 세부사항들, 특히 그러한 입법이 잠정적 특별 조치의 강제적 혹은 자발적 성격에 대한 규정을 두는지의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31.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이나 국내 법률에 잠정적 특별 조치의 채택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포괄적인 반차별 법안, 평등기회 법안 혹은 여성평등에 관한 행정명령 등의 같은 입법이 주어진 분야에서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잠정적 특별 조치의 유형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러한 지침은 또한 고용 혹은 교육에 관한 특별한 입법에도 포함될 수 있다. 반차별 및 잠정적 특별 조치에 관한 관련 입법은 사적 조직 혹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측 행위자들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32. 본 위원회는 잠정적 특별 조치가 전국적, 지역적 혹은 지방 행정기관이 공적 고용과 교육의 분야에 대하여 입안하고 채택한 명령, 정책 지침/혹은 행정 지도에 기초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당사국의 주의를 요청한다. 그러한 잠정적 특별 조치는 시민 서비스, 정치 역역 및 사교육과 고용의 분야도 포함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잠정적 특별 조치가 공적 또는 사적 고용 분야의 사회적 파트너와 협상될 수 있으며 또 공적·사적 기업, 단체, 기구, 정당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국의 주의를 요청한다.

33. 본 위원회는 잠정적 특별 조치를 위한 행동 계획이, 특정한 국내적 맥락 안에서 그리고 극복하고자 하는 사안들의 특징적 배경에 대응하여 구상, 적용,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차 강조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정 분야에서 여성에게 접근성을 만들어 주고 과소 대표성을 극복하며 특정 영역에서 자원과 권력을 재분배하고

/또는 과거와 현재의 차별을 극복하고 사실상 평등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도록 고안된 행동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국의 보고서에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보고서는 또한 그러한 행동 계획이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역효과를 고려하는지 및 그에 대항한 여성 보호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서 잠정적 특별 조치의 결과를 기술하고 그러한 조치를 실패하도록 했다고 생각되는 원인을 평가해야 한다.

34. 제3조에 따라 당사국은 잠정적 특별 조치를 구상, 이행, 감시, 평가 및 집행할 책임을 진 기구(들)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책임은 여성부, 각 부처나 대통령실의 여성부서(presidential offices), 옴부즈맨, 법원 혹은 특별 프로그램을 구상, 감시, 이행하고 그 영향과 결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위임을 받은 기타 다른 공적, 사적 단체 등 기존의 혹은 계획된 국가 기구에 부여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일반적으로는 여성, 특수하게는 영향을 받는 여성 집단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구상, 이행 및 평가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다양한 여성 집단을 대표하는 시민 사회와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및 협의도 특별히 권고하는 바이다.

35. 본 위원회는 여성 지위에 대한 통계 자료에 관한 일반권고 9에 주목하고 이를 반복하며, 당사국에게 여성의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의 향상 달성도와 잠정적 특별 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로 분류된 통계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36. 당사국은 동 협약의 관련 조항(들)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취해진 잠정적 특별 조치의 유형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각각의 관련 조항에 대한 보고에는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일정, 특정한 조치 선택의 이유, 그러한 조치들에 여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이행과 발전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기구 등에 관련된 사항들이 수록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얼마나 많은 여성이 특정 조치들의 영향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수의 여성이 잠정적 특별 조치로 인하여 특정 분야에 접근하고 참여할 기회를 얻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수의 여성에게 얼마나 많은 자원과 권력이 재분배될 것인지와 그것이 어떠한 일정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도 기술하여야 한다.

37. 본 위원회는 일반권고 5, 8 및 23에서 교육, 경제, 정치 및 고용 분야와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이 자국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기구 사무에 참여하는 영역, 그리고 정치적 및 공적 생활 분야에 대한 잠정적 특별 조치 적용을 권고한 것을 반복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적 배경에서, 공적 및 정치적 생활에서의 모든 차원과 수준의 훈련, 고용 및 대표성과 더불어 교육의 차원에서 관련된 상기의 시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모든 경우에서, 그러나 특히 보건 분야에서, 당사국이 영구적으로 진행 중인 조치들과 잠정적으로 진행 중인 조치들을 신중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38. 당사국은 잠정적 특별 조치가 여성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문화적 관행, 고정적 사고방식과 행동의 변경 및 근절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잠정적 특별 조치는 또한 신용과 대출, 스포츠, 문화 및 오락, 법적 인식의 분야에서도 이행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들은 시골 여성을 포함하여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39. 잠정적 특별 조치의 적용이 동 협약의 모든 조항 하에서 가능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한편, 평등한 참여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잠정적 특별 조치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다른 한편으로,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촉진과 일정 상황 하에서 그러한 조치가 절실하고 가장 적절한 경우에는 잠정적 특별 조치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주(註)

¹ 간접적인 여성 차별은 법, 정책 및 프로그램이, 실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성 중립적인 기준에 기초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성 중립적인 법, 정책 및 프로그램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차별의 결과를 영속화시킬 수도 있다. 그것들은 남성적 생활방식을 모델로 삼고 따라서 남성과는 상이한 여성의 생활 경험적 요소들을 반영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토대로 하여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정 관념적인 기대와

사고방식 및 행동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또한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² “성(gender)은 생물학적인 성적 차이에 부여된 사회적인 의미로 정의된다. 그것은 이
념적이고 문화적인 구조이지만, 역시 세속적인 관행의 영역에서 재생산된다. 또 이는
그러한 관행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성은 자원, 부, 직무, 정책 결정 및 정치적 권
력, 그리고 권리 행사와 공적 생활과 가족생활 내에서의 위치의 분배에도 영향을 준
다. 문화와 시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적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불균형은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은 사회적 계급이고, 이런 의
미에서 인종, 계층, 민족, 성적 취향, 나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성은 우리가 성적 정체성
의 사회 구조와 양성 간 관계의 바탕이 되는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1999년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엔, 뉴욕, 1999, p 9.

³ 예를 들어, 잠정적 특별 조치를 명령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
약” 참조.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및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같은 조약 감시 기구의 관행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구들이
잠정적 특별 조치의 적용을 조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원조 하에 채택된 협약들과 “유엔 교육, 과학 및
문화 기구”의 여러 문서들 역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연구,
활동을 보고할 특별 보고자를 임명하였다. 여성지위에 관한 위원회는 1992년 잠정적
특별 조치의 이용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 강령을
비롯하여 세계여성회의에서 유엔이 채택한 문서들과 이후 2000년 후속조치를 검토
해 보면, 사실상 평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사용하는 잠정적 특별 조치는, 사무국에서의 여성의
채용, 승진, 전근에 대한 행정적 지침을 포함한 여성 고용 분야의 실제적인 예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수준에서 50/50의 성비율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
히 상위 직급에서 더욱 그러하다.

⁴ “적극적 행위”라는 용어는 미국과 다수의 유엔 문서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긍정적
행위”는 현재 유엔 문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행위”라는 용어는 국제인권법에서는 아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긍정

적인 국가 행위”(국가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에 대응하여 주도적인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나타낸다. 따라서 “긍정적 행위”라는 용어는 동 협약 제4조 1항에서 이해되고 있는 잠정적 특별 조치를 나타내는 의미로서는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역차별” 혹은 “적극적 차별”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많은 논평자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IV.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쇄일 | 2006년 8월 일
발행일 | 2006년 8월 일
발행인 | 조 영 황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 (02) 2125-7932
팩 스 | (02) 2125-9738
인 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비매품>